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206호)

「관세법」 제 68조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 부과하였던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21.12.31.로 만료 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품명	기준발동물량(톤)	특별긴급관세율(%)
1006.10.0000	벼	439,293	684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찰쌀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102.90.2000	쌀가루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 (원/kg)	특별긴급 관세액(원)
1006.10.0000	벼	145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에 따른 금액
1006.20.1000	메현미	145	
1006.20.2000	찰현미	145	
1006.30.1000	멥쌀	145	
1006.30.2000	찰쌀	145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45	
1102.90.2000	쌀가루	145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145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45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45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45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31,017	
1211.20.1120	새싹삼	31,017	
1211.20.1190	기타	31,017	
1211.20.1211	본삼	31,017	
1211.20.1219	기타	31,017	
1211.20.1291	본삼	31,017	
1211.20.1299	기타	31,017	
1211.20.1311	본삼	41,583	
1211.20.1319	기타	41,583	
1211.20.1391	본삼	41,583	
1211.20.1399	기타	41,583	
1211.20.2210	가루	41,583	
1211.20.2220	태블릿	41,583	
1211.20.2290	기타	41,583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41,583	
1211.20.3200	종자	41,583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41,583	

비 고

1.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2. 품목번호 및 품명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따른다.

II. 시행일

-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함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2] 입법예고 공고문(특별긴급관세)

| Contact



홍재현 팀장

T 070-4353-1547
E jhhong@esein.co.kr



유호성 팀장

T 070-4353-1522
E hsyou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